

[별표 3]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가. 산업용컴퓨터	○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1) 접속 커넥터		○		
		2) 분기기		○		
		3) 분배기		○		
		4) 동축케이블		○		
		5) 보호기		○		
		6) 가압자보호기(CATV)		○		
		8) 광분배기		○		
		9) 광케이블		○		
		10) 직렬단자		○		
		나.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		○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다. 단말기기류	1) 공중전화기	○		○	
		2) ISDN 망중단 기기 (NTE)	○		○	
		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 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 밀리 ISDN 라우터 등)	○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 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 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정격입 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 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			